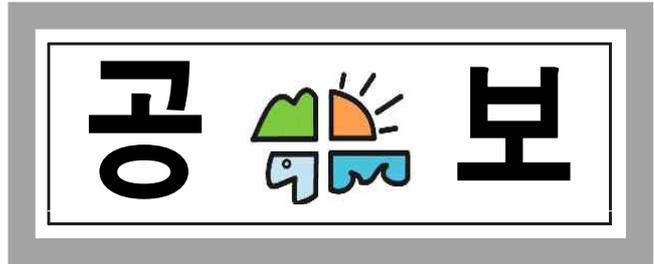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64호 2015년 11월 20일(금)

조 례

-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
-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3
-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28
-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31

공 고

-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37
- 속초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25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지)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는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으로 “같은 영 제57조의3”은 “같은 영 제38조의15”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가산징수 등)”을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숙박비(1박당)란의 “46,000(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과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의 “40,000”을 각각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포함)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으로 한다.

별표 비고 1의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2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비고 5, 비고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실비지급 요청시 실비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2014.11.19.) 및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2015.1.6.)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26호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수수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생교육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6.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사용료, 수수료
7. 그 밖에 시장이 예우대상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3대 이상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27호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자문위원회”를 “속초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숙박시설 (1인1일)	청소년	단 체	8,000	○ 조간,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한다.	
	일 반	단 체	10,000		
체육관	오 전	경 기	1회	40,000	○ 이용시간 구분 - 조간 06:00 ~ 09:00 - 오전 09:00 ~ 13: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8:00 ~ 22:00 ○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 1회기준 사용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시간 사용으로 본다. ○ 회의실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본다. ○ 기타는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로 본다.
		경기외	1회	80,000	
		기 타	1인	800	
	오 후	경 기	1회	40,000	
		경기외	1회	80,000	
		기 타	1인	800	
	조 간 야 간	경 기	1회	80,000	
		경기외	1회	160,000	
		기 타	1인	1,600	
회의실	1회 (4시간)	청소년	1회	15,000	○ 숙박시설은 관내 청소년 사용시 3,000원 할인한다. ○ 체육관은 속초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오전·오후에 한하여 전기료는 면제한다.
		일 반	1회	30,000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는 1998. 6. 5. 제정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어, 그 동안의 공공 요금·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용료 현실화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28호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 중 “요구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상위법 규정에 맞게 규제사항 개선

나.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29호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및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 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안전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가족지원시설
6. 병원, 보건소, 119 등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속초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

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 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④ 서기는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를 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관련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의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8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 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20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한명인 부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은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0호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을 “부시장과 유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사항
제6조제2호 단서 중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을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분쟁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 당해분쟁”을 “그 밖에 해당분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최한 때”를 “개최한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지역경제담당”을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로, “40인 이상의 연서로,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소”를 “주소·연락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소”를 “주소·연락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작성한 때”를 “작성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기한 때”를 “제지한 경우”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분쟁조정”을 “해당분쟁조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그”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1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1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지정·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변경과”를 “지정·변경·취소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을 “지정·변경·취소대상”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2.(삭제)

⑥ 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하며,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을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2호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속초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권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속초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

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의 현황

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손금 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나. 현행 조례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을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433호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평가 및 공포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제4조(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전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돗물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4호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

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 보상) 시장은 협의회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 개정이유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동절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중지 공고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상수도 개인급수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급수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시중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1. 중지기간 : 2015. 12. 07. ~ 2016. 03. 02
2. 중지내용 :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
3. 중지사유 :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급수설비의 효율적 관리
4. 문 의 처 : 속초시상수도사업소(☎ 033-639-2668)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사항을 개선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허가기준 변경(안 제4조 [별표 1])
-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관리담당(전화: 033-639-2375, FAX: 033-639-246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개시 전 양도 · 양수금지)</p> <p>허가를 득한 후 사업개시 이전에는 양도 ·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p> <p>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p> <p>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사업개시 전 양도 · 양수금지)</p> <p><u><삭 제></u></p>

관 계 법 령 발 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4.1.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4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3.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은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하생략)